

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개정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방산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제도를 개선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열린 제238회 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기술료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고 11월 14일(목)에 개정·발령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술료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를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과 연구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먼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23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출기술료 50% 감경조치를 국방과학 기술료 재원이 국방연구개발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4.12.31.부로 종료합니다.

다음으로,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술료 산정방식과 감면조건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범위형 기술료 산정기준을 정량화하여 기술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 “이번 기술료 고시 개정으로 기술보유기관과 방산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료 산정 방식과 감면조건 등이 실효성 있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 등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술료 고시 개정의 세부 내용은 청 공식 누리집(<https://www.dapa.go.kr>)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방위사업청 누리집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담당 부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	책임자	국장	권영철 (02-2079-6800)
		담당자	과장	김효성 (02-2079-6380)



<참고> 기술료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방산수출 기술료 50% 감경 조치 종료('24.12.31.부)
- 기술료 산정기준 현실화 및 산정방식 간소화
 - 방산물자 등 수출 시 경상기술료 기준을 순조달가 대비 산정이 용이한 순수출가로 변경
 - 국내 민수품 생산 시 기본기술료는 연구개발비 10% 고정으로 간소화

개정 전	개정 후
• 제4조(기술료) 제③항 2.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민수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 기본기술료 : 기본기술료는 별지 제2호의 기본기술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기술료) 제③항 2.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민수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 기본기술료 :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
 - 기본기술료 산정 시 가중치를 기존 범위형에서 명확한 고정값으로 변경
 예시> 자료 가중치 : 계획서(2~3), 절차서(3~5)를 계획서(2), 절차서(3) 으로 변경

- 기술료 산정 시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기여도 반영 근거 마련
 - 기술보유기관과 기술이전 신청기관이 기여도를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를 기술료 산정 시 반영

○ 기술료 감면조건을 실효성 있게 개선

- 국내 운용 중 또는 전력화 계획 물자의 수출물량에 따른 감면조항 삭제

개정 전	삭 제
• 제5조(기술료 감면) 제②항 기술료 감면규모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운용 대수 및 전력화 계획 수립 대수의 10% 이하의 물량 : 기술료액의 60% 감면..... 5.까지	• 제5조(기술료 감면) 제②항 <삭제>

- 군 도태 장비 수출의 경우, ‘개발 연차 20년 이상’ 조건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 제5조(기술료 감면) 제③항 1. 라. 기술개발 연차가 20년 이상으로서, 군 도태장비를 제2조1항에 의한 물자수출하는 경우	• 제5조(기술료 감면) 제③항 1. 라. <삭제>, 군 도태장비를 제2조1항에 의한 물자수출하는 경우

○ 기술료 한도 제외(‘25.7.1.부)

- 국외 기술도입국에 의한 제3국 수출, 순수 기술수출의 경우에는 기술료 누적징수 한도(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70%) 미적용
- 연구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누적징수 한도 및 기본기술료 한도(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 미적용